



# 태 영 상 선 주 식 회 사

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51번지 해운센타 신관 603호

TEL : (02) 753-1271~6 FAX : (02) 753-1270

일 자 : 2018. 6. 20  
 수 신 : 화주사 제위  
 발 신 : 태영상선 주식회사  
 제 목 : 한중항로 수출화물 AFS & AFA 적용 안내

1.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드리며, 평소 폐사를 이용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.

2. 2018년 6월 1일부로 중국항 수출화물에 대하여 적재 24시간 전 사전신고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, 부득이하게 한국발 중국항 수출화물에 대한 AFS(Advanced Filing Surcharge) & AFA(Advanced Filing Amendment Fee)를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, 화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시행시기 : 2018년 7월 1일 수출화물부터 적용

나. 시행대상

- AFS : 한중항로 한국발 중국항 수출화물

- AFA : 한중항로 한국발 중국항 수출화물에 대하여 적재 24시간 전  
신고 후 B/L을 정정하는 경우

다. 지불 : PREPAID (한국)

라. 요율

NAME	RATE
AFS(Advanced Filing Surcharge)	USD 30/BL
AFA(Advanced Filing Amendment Fee)	USD 40/Amendment **

\*\* 도착지 Penalty 발생시 해당 금액 별도

3. 감사합니다.

태영상선 주식회사

컨테이너영업팀장

## JS SONG